

성남시 의회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 토 보 고

□ 제안이유

- 제138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중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2항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 의회 운영위원의 기능과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개정 조문 (안 제16조 제2항)

- 현 행 :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하고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결정 한다.
- 변 경 :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결정 한다.”

□ 검토의견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제2항의 “의사일정작성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하고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결정 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법 제43조(의장의 직무)에 규정된 의장의 의사 정리권인 의사일정결정권을 배제한 것으로 동법에 위배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51조(위원회의 권한)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작성 협의권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운영 위원회 권한임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들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동법과 동 조례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금번 개정 요구안대로 제16조 제2항을 “의장은 교섭 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결정 한다”로 개정하면,

지방자치법 제51조(위원회의 권한)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규정의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했던 것은 해소될 수 있으나.

의장의 의사정리권인 의사일정 결정권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3조(직무권한)를 계속 위배하는 것으로 의장의 권한을 제한할 것으로 관련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회의규칙 중 제16조 제2항의 의사일정의 작성은 국회법과 경기도 등의 광역단체와 고양시 등의 인근지자체의 조례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토록 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장의 의사 정리권과 우리시 조례에서 정한 의회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특히 우리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12명의 의원 중 교섭단체의 대표단 8명이 선임되어 국회 또는 경기도의회보다도 더 많은 비율의 교섭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있어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과 상충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사항으로 관계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자치분권 제도팀과 한국 공공자치 연구원 및 한국산업기술원의 전문기관의 의견은 의장의 의사정리권과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 제43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제50조(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 제51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 성남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 이하생략

□ 의사일정 작성에 관한 타 기관과의 실태

국 회 법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고양시의회	※전 성남시의회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② (생략)	제21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생략)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생략)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생략)
③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한 회기동안의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생략)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생략)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생략)

□ 국회, 경기도 의회운영위원회 실제 운영실태

○ 경기도의회 : 실무자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교섭대표와 협의한 후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본회의에서 결정하되 운영위원회를 폐회중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회기일정을 의결함.

○ 국 회 : 실무자와 교섭단체가 정치적 일정을 고려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후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회기중 부분 일정변경은 교섭단체와 의장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 현행규칙(제16조 제2항)에 대한 전문기관과 전문학자 의견

○ 행정자치부 자치분권 제도팀

제16조 제2항은 지방의회 의장의 의사 정리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위반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됨.

○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제16조 제2항은 의장의 의사 정리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되며, 이규정은 성남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됨으로 효력이 없다할 것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사일정을 정하는 과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이를 법령이나 의회규칙에 규정할 사항은 아님. 국회에서도 여·야 원내 대표들이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것은 국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 타결을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권한임.

○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원

의장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개정된 「성남시 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은 상위법규인 「성남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규정을 위반한 것 이라고 판단됩니다.